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27
----------	-------

발의연월일 : 2026. 7. 23.

발 의 자 : 김현정 · 김준환 · 정일영
강준현 · 이훈기 · 양부남
손명수 · 박홍배 · 민병덕
송영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은 12월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총회를 위한 주주 기준일의 설정,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3월 말에 정기총회를 집중 개최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면서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위하여 소집일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71조의2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4장에 제1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1조의2(정기총회일의 변경 권고) ① 주권상장법인은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특정일에 다수의 정기총회 소집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에 정기총회일을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일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기총회일 2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9조 제3항 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제8호의5 및 제8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17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17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총회일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1조의2(정기총회일의 변경 권고) ① 주권상장법인은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거래소는 특정일에 다수의 정기총회 소집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에 정기총회일을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일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기총회일 2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u>
제449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의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449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8의2. (현행과 같음) <u>8의3. 제17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8의4. 제171조의2제3항을 위반</u>

<u>8의3. · 8의4.</u> (생략)	<u>하여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u> <u>자</u>
9. ~ 21. (생략)	<u>8의5. · 8의6.</u> (현행 제8호의3 및 제8호의4와 같음)
④ (생략)	9. ~ 21.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